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의2서식] <개정 2018. 3. 21.>

#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

(앞쪽)
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|
|---|---|---|
| | |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징수의무자인적사항 | 상 호(법인명) | [ ] 종교단체<br>* 해당되면 √표기 | 대 표 자 |
| | 사업장주소 | | 업 종 |
| | 사업자등록번호 | | 전 화 번 호 |

## 상시 고용인원수의 계산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(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의 고용인원 누계를 적습니다) | | ② 평균인원수 (① / 월수) | |

##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(일용근로 소득은 제외)

(단위: 원)

| 월 | 인원 | 적용연도 | | 직전연도 |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총지급액 | 소득세 징수액 | 총지급액 | 소득세 징수액 | |
| 1월 | | | | | | |
| 2월 | | | | | | |
| 3월 | | | | | | |
| 4월 | | | | | | |
| 5월 | | | | | | |
| 6월 | | | | | | |
| 7월 | | | | | | |
| 8월 | | | | | | |
| 9월 | | | | | | |
| 10월 | | | | | | |
| 11월 | | | | | | |
| 12월 | | | | | | |
| 합 계 | 명 | | | | | |

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86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원천징수의무자 (서명 또는 인)

**세 무 서 장** 귀하

## 작 성 방 법

1. "② 평균인원수"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.
2. "적용연도"의 총지급액(비과세포함)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. 다만,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,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.

※ "적용연도"란은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 다만,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.

3.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## 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※ 이 신고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